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 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부산직할시사하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 62호, 1988. 5. 1.)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